

감사위원회 규정

2025. 3. 26.



(제정 : 2008. 5. 16.)

(1 차 개정 : 2009. 2. 19.)

(2 차 개정 : 2018. 12. 20.)

(3 차 개정 : 2021. 5. 27.)

(4 차 개정 : 2022. 3. 25.)

(5 차 개정 : 2022. 12. 21.)

(6 차 개정 : 2024. 3. 29.)

(7 차 개정 : 2025. 3. 2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 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사외이사 아닌 위원을 선임할 경우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장은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7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안건, 장소 등을 정하여 개최일 3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해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위원회의 검토 및 토의사항에 대하여도 제 1 항을 준용한다.

제 9 조 【기능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3.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
 6. 업무·재산 상태 조사
 7.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8. 감사인의 선정 또는 해임 요청
 9.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11. 연간 내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검토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사전심의
 13.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③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3. 전기 감사인의 의견진술 청취
 4.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6.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
 7.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및 평가 결과 등의 문서화
 8. 감사인 선정 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후 준수 여부 확인
 9.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 또는 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2 조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13 조 【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4 조 【내부감사부서】

- ① 위원회는 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부서를 둔다.
- ② (삭제, 2024.03.29)
- ③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 동의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장의 인사평가에 대한 검토 및 승인권을 갖는다.

제 15 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2008. 5. 16.)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년 5 월 16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2009. 2. 19.)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2 월 1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0.)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년 12 월 20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1. 5. 27.)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년 5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2. 3.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년 3 월 2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년 1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4. 3. 29.)

(시행일) 이 규정은 2024 년 3 월 2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25. 3.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년 3 월 26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